

# 定 款

(2026. 4. 24. 개정)

學 校 法 人 鳳 德 學 園

# 학교법인 봉덕학원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WASC인증)의 글로벌시민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봉덕학원(鳳德學園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한가람고등학교
2. (삭제)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 (909-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5.>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3. 2. 6.>
-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2. 6.>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 간사 등)**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11. 04. 30.>

2. 감사 2인

**제22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 이사 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절상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연임 가능)
2. 감사 3년(1회 중임 가능) <개정 2006. 10. 27.>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임기의 절반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기를 적용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의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한가람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10. 27.>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6. 10. 27.>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제25조의2(감사선임의 제한)** 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3(비리임원의 복귀 규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2. 6.>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2. 6.>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2. 6.>
3. 관할청의 요구에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2. 6.>

**제25조의4(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2. 6.>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1.04.30.>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의2(임원의 생계비 등 지급)** ①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거한다.

**제30조의3(상근이사의 분장업무 및 보수)**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의 분장업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임용권을 전부 총 학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0. 27.>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장 수익 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사업(임대업)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유가 증권 투자

## 제37조 내지 제38조 삭제

**제39조(관리인)** ①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9. 8.>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7. 15.>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1관 임용

- 제43조(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설 2023. 2. 6.>
-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3. 2. 6.>
- ③ 고등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3. 2. 6.>
- ④ 한가람고등학교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23. 2. 6.>
- ⑤ 임용권자는 한가람고등학교의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신설 2023. 2. 6.>
-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한가람고등학교의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 ⑦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6.>

- 제43조의2(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해당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시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제43조의3(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의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4(학교장 임기)** ① 한가람고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한가람고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③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1.>

**제43조의5(교사의 신규채용)** 삭제 <개정 2023. 2. 6.>

**제43조의6(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25.>

**제43조의7(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교원 임용)** 삭제 <개정 2025. 9. 8.>

## 제2관 신분 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민간 공익법인 및 외국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때<개정 2025. 9. 8.>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개정 2019. 1. 1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

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9. 1. 17.>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 17.>
2.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1.>
5.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7호의 사유 중 육아,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입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1.>
7. 제4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 17.>
9. 제4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 17.>
10. 제44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17.>
11. 제4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 1. 17.>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7.>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1.>

③ 제4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1.>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6.>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9. 8. 21.>

⑤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교육 경력(교육행정 경력과 교육연구 경력 포함)이 30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재직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당의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수당 지급 공고 : 임용권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수당 지급 방법, 수당 지급일,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2. 지급 심사, 결정 : 임용권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지급 대상자 통지 :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 수당 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감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교감 재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보직, 업무분장(담임 배정 포함)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9.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11. 재직 교원 1/3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6. 4. 24.>

**제5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인사위원회는 교감(당연직) 포함 총 10명 이내의 소속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당연직인 교감을 제외한 위원은 매년 12월 전체 교원 회의에서 연령별 대표성, 성별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되, 각 교과별(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과학과, 체육/예술/생활/교양과)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제54조(인사위원회 임원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임원은 위원 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결과를 학교장과 이사회에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을 '병렬협조'로 결재경로에 넣어 전자문서로 학교장에 제출하고 전체 교원에게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6. 4. 24.>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학교법인 정관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에서 규정한 심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등을 밝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전체 교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4.>

**제5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인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요구는 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4. 24.>

**제57조(결과 공개 및 이사회 보고)** ① 위원장은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전체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단,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결정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

② 이사회에서 교원 임용 관련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은 학교장을 통해 이사회에 회의 결과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회의 결과 제출 시 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정 사항에 덧붙여 소수의견도 내용에 포함한다.

<개정 2026. 4. 24.>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4.>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3. 2. 6.>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4. 21.>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3. 2. 6.>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종류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2. 6.>

## 제60조 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 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징계 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②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 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3. 2. 6.>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2. 6.>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④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

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 의결 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5.>

**제66조의3(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관 제65조(「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 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징계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6.>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 제3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한다)

<개정 2024. 7. 15.>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을 말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 2. 6.>

**제85조(복무)** ①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1. 25.>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6.>

##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고등학교

**제90조(교장 등)** ① 한가람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제91조(행정실)** 한가람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30.>

## 제3절 외국인학교(삭제)

**제92조(교장 등)** (삭제)

**제93조(행정실)** (삭제)

**제93조의2(특례)** (삭제)

## 제4절 정원

**제94조(정원)** 법인 및 한가람고등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09. 08.>

##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한가람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2. 6.>

**제9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해당 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추천 범위는 교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로 규정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98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1조제3항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0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규정의 제·개정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2. 6.>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2. 6.>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 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1. 5.>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2. 6.>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제10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0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3. 2. 6.>

**제10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0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개정 2023. 2. 6.>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제113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2. 6.>

②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4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5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116조(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18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삭제)

제11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20조(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

제1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제122조(위원장) (삭제)

제123조(위원의 의무) (삭제)

제124조(분쟁조정 신청) (삭제)

제125조(회의 개최 등) (삭제)

제1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

제12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삭제)

제128조(간사) (삭제)

제129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삭제)

제130조(운영세칙) (삭제)

## 제10장 보칙

**제13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1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3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봉 덕	1921. 4. 17	1959. 1. 17 - 1963. 1. 1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44
이 사	이 명 수	1919. 12. 17	"	상 동
이 사	김 용 주	1911. 7. 3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437
이 사	오 수 영	1889. 6. 4	1959. 1. 17 - 1963. 1. 1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30
이 사	오 황 월	1929. 6. 20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238
이 사	이 명 덕	1918. 10. 19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산14
이 사	이 동 권	1921. 1. 18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238

**제134조(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①이 법인이 설립 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자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출 연 재 산 내 역					연 도	출 연 의 사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평)	평 가 기 준	평가금액 (환)		
이봉덕	1921.4.17	용산구 남영동 62번지	대	51	50,000	2,550,000	1959	출연
		용산구 남영동 62번지	건물 (2층)	26	110,000	2,860,000	1959	출연
				22	55,000	1,210,000		
		영등포구 양평동1가 239번지	대	484	8,000	3,872,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0번지	대	210.3	8,000	1,682,400	1959 (1964)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번지	대	280.2	8,000	2,241,6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지	대	809	8,000	6,472,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지	건물	137.5	37,500	5,156,250	1959	출연
				137.5		10,312,500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자	건물	32	75,000	2,400,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지	건물	5	75,000	375,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지	건물	6	50,000	300,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0번지	건물	18	65,000	1,170,0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0번지	건물	76.66	65,000	4,982,900	1959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6번지	건물	33.33	65,000	2,166,450	1959	출연		
이명수	1919.12.17	화물자동차		1대	1,500,000	1,500,000	1959	출연
		짚 차		1대	2,000,000	2,000,000	1959	출연
합 계						51,251,100		

성명	생년월일	출연 재산 내역					연도	출연사
		구분	수량	면적 (평)	평가 기준	평가금액 (원)		
이봉덕	1921.4.17	직원용책상	15			미상	1959	출연
		직원용의자	20			미상	1959	출연
		책상및의자(학생용)	400			미상	1959	출연
		책판	10			미상	1959	출연
		게시판	4			미상	1959	출연
		서류상	10			미상	1959	출연
		신장	6			미상	1959	출연
		교단 및 교탁	10			미상	1959	출연
		풍금	1			미상	1959	출연
		전화기	1			미상	1959	출연
		쇼파	1			미상	1959	출연
기타	20			미상	1959	출연		
합계								

②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또는 기부한자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출 연 재 산 내 역					연 도	출연의사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가 기준	평가금액 (원)		
이봉덕	1921. 4.17	영등포구 양평동1가 189-2	대	542,5		14,769,000	1968	출연
이명수	1919.12.17	인천 북구 경서동 산 251-1	임	16,500		1,500,000	1970	증여
이봉덕	1921. 4.17	인천 북구 경서동 산 253-1	임	61,182.6		5,562,000	1973	출연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90	건물	1,980		68,400,000	1974	출연
		강서구 화곡동 343-64	대	305		6,461,000	1975	출연
		강서구 화곡동 343-64	건물	338,08		12,576,000	1975	출연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산10-1	임	98,329		1,800,000	1975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대	12,134		58,728,000	1975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5,240.77		238,200,000	1977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119.98		4,366,000	1977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214,72		9,759,000	1977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193.5		7,032,000	1977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10.8		320,000	1977	출연
		강서구 신정동 10-2	건물	3,319.2		150,870,000	1977	출연
		인천 서구 경서동 490	건물	71.28		1,404,000	1979	출연
		인천 서구 경서동 490	건물	39,6		1,044,000	1979	출연
		인천 서구 경서동 490	건물	19.8		-	1979	출연
		충남 천안시 봉명동 97-7	건물	46.5		7,612,000	1980	출연
		충남 천안시 봉명동 97-7	대	170		51,000	1980	출연
		채 권				1,225,000	1984	출연
합 계						591,679,000		

성 명	생년월일	출 연 재 산 내 역					연 도	출연의사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가 기준	평가금액 (원)		
이봉덕	1921.4.1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15	임야	33,058		52,232,000	1992	증여
		강서구 등촌동 366-117	대지	260		228,800,000	1994	증여
		강서구 등촌동 366-117	건물	161		13,647,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611-2	잡종지	3,487		218,635,000	1993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641-8	잡종지	19,701		1,412,562,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641-11	잡종지	6,312		452,570,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642-1	잡종지	12,000		752,400,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490	대	1,098		19,554,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491	대	179		3,186,000	1994	증여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산78	임	5,554		54,762,000	1994	증여
		인천 서구 경서동 490	건물	217		143,000,000	1996	증여
	현 금				1,250,000,000	1998	출연	
이옥식	1958.5.17	현 금				210,000,000	1998	출연
합 계					4,811,348,000,			

**제135조(행동강령)** 학교법인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6.>

**제136조(외국인학교) (삭제)**

**제137조(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2. 6.>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6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6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7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7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8조 제7항의 3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결격 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8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 3년간으로 한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3년 5월 7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별표 2의 변경으로 감축되는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9인(부참사 2, 주사 2, 부주사 1, 부서기 1, 기능직 10등급 3)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학교법인 봉덕학원 및 설치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 제14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의3, 제44조 및 7항, 제45조 6항, 제47조, 제100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 및 제25조의2에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5조에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08년 4월 28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0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0.년 7월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1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1. 5.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1. 7.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1. 9 .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1. 12 .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2. 02.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3. 05.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3. 10.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4. 05.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4. 10.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무직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능직의 직급과 호봉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5. 5.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5. 8.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5. 1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6. 5.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7. 9.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9. 1.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19. 8.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0. 1.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0. 4.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1. 4.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1. 7.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1. 11.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정관은 2023. 4.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4. 2.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4. 7.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5. 9.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6. 2.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6. 4.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5 명
일 반 직 계	2 명
5 급 ( 사 무 관 )	1 명
6 급 ( 주 사 )	.
9 급 ( 서 기 보 )	1 명
9 등 급 계	3 명
운 전 기 사	1 명
고 용 원	2 명

[별표 2]

## 사 무 직 원 정 원

구 분	한가람고등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총 계	5	6
일 반 직 계	5	6
5 급 ( 사 무 관 )		1
6 급 ( 주 사 )	1	
7 급 ( 주 사 보 )		1
8 급 ( 서 기 )	1	1
9 급 ( 서 기 보 )	3	3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40조의 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하는자의 경우에는 특별 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 월수
2. 5년 초과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times \frac{\text{정년잔여 월수} - 60\text{일}}{2}$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 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지급액은 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